

부산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나1647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나1647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3가단383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변론 종결 2014. 5. 30.

판결 선고 2014. 7. 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3가단383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대 70.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m²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D은 부산 동구 C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부산 동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현재 원고 소유 건물의 외벽(별지 도면 표시 2,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과 피고 소유 건물은 맞닿아 있는 상태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울산본부 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F과 피고가 방수 및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에 피고 소유 건물 지붕을 원고 소유 건물에 접착시켰던 것이고, 원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문기선

판사이준구

별지